

#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2019.11.6

## CONTENTS

---

### I. 고령사회에서의 상속

---

### II. 우리나라 상속시장 현황

1. 상속시장 규모
2. 상속시장 특징

---

### III. 상속시장의 과제

1. 배우자 상속
2. 주택 상속과 주택연금
3. 노노(老老)상속
4. 유류분 제도

---

### IV. 시사점

정나라 선임연구원

02-3774-6979 | nara.jung@miraeasset.com

## < 요약 >

-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는 우리나라 상속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고령화되고, 자녀 독립 후 부부끼리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등 생활 양식이 달라지면서 상속 및 부양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 상속자산 규모는 총 35.7조 원, 23만 건(2017년 기준)에 달하며, 이 중 과세 상속시장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4가지 특징을 가짐.

### < 우리나라 과세 상속시장의 4가지 특징 >

구분	내용
연령	피상속인 중 '80세 이상'이 절반(51.4%)
금액	'10억~20억'이 가장 많음(38.4%)
자산구성	부동산 중심(59.8%)
실효세율	평균 17.2%, '10억~20억' 구간 5.5%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7), 과세 부문 기준

- 고령사회가 가져온 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상속 관련 주요 화두인 '배우자 상속·주택연금·노노상속·유류분 제도'에 대해 각각 풀어야 할 과제를 안게 됨.

### < 고령화가 상속시장에 남긴 과제 4가지 >

	<b>배우자 상속</b>	고령화로 생존 배우자의 수명 증가 ▶ 생존 배우자의 주거와 부양에 관한 문제, 배우자와 자녀 간 재산권 다툼 등 상속에 관련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가 필요함.
	<b>주택 상속과 주택연금</b>	주택 상속에 대한 인식 변화와 노후 현금흐름 수요 증대로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 여전히 주택을 미래 상속재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주택연금 가입에 걸림돌, 주택연금 배우자 상속 시 자녀 동의를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어 대안이 필요함.
	<b>노노(老老)상속</b>	고령화로 상속인인 부모와 피상속인인 자녀가 모두 고령자가 됨 ▶ 자산이 고령층 내에서만 머무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내수 소비 저하, 치매로 인한 자산관리 문제에 대응해야 함.
	<b>유류분 제도</b>	유류분 제도는 본래 경제력 없는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것인데, 고령화로 상속자녀의 연령이 증가해 상속인 대부분이 경제력을 갖추게 됨 ▶ 유류분 제도의 실질적 효용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

- 개인·자본시장·정부는 각각 고령화로 인한 상속시장의 변화와 과제를 인식하고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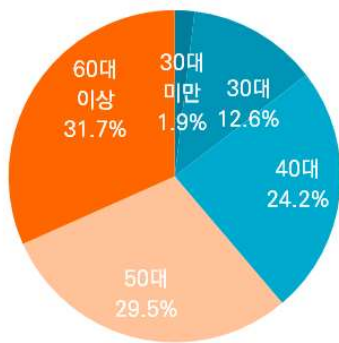
## I. 고령사회에서의 상속

● 고령사회를 맞아 우리 사회의 고령인구 수와 이들의 보유자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속은 향후 보편적 문제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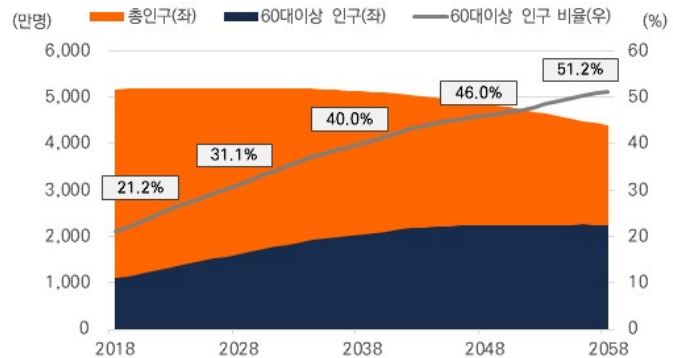
- 국내 가계 보유자산 중 31.7%는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가 보유하고 있으며, 29.5%는 50대가 보유하고 있음.
- 국내 총인구 중 60대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21.2% → 10년 후 31.1% → 20년 후 40.0% → 40년 후 51.2%'로 급증할 전망이다.

〈도표 1〉 고령층 보유자산 비중 및 인구 추계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비중〉



〈향후 40년간 인구 추계〉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7) 및 인구총조사(2017)  
가주주 연령대별 자산은 연령대별 평균 자산 및 가구 수를 바탕으로 추정함.

● 상속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으로, 개인·경제·사회적으로 폭넓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령사회에서 그 역할이 중요해짐.

① [개인] 경제적 생애주기 관점에서 개인은 전체 노후자산 중 얼마를 소비하고 얼마를 상속할지 선택해야 하며, 증여를 할 경우 시기와 방법, 대상을 결정해야 함.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개인의 노후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은퇴 후 살아야 할 날이 긴 고령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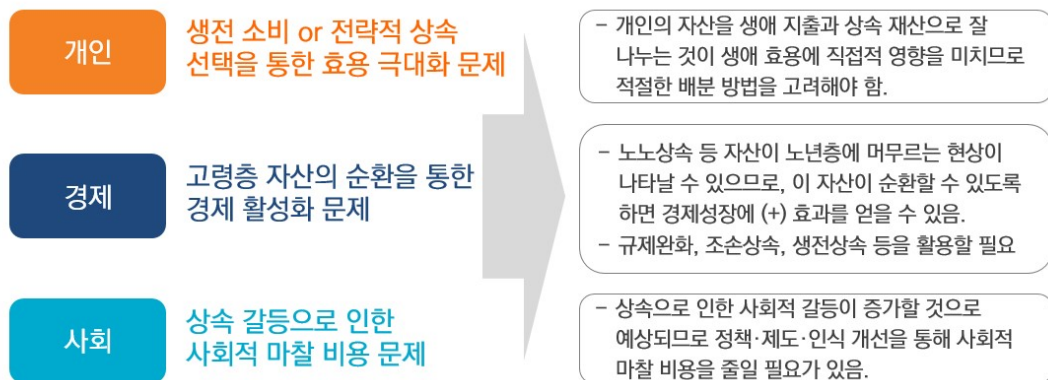
② [경제]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에서는 이미 '노노(老老)상속'과 같은 사회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내수 소비가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 노노(老老)상속: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등장한 단어로, '부모 노인이 자녀 노인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의미임.

③ [사회] 상속이 일부 부유층의 문제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중 절반 이상은 청구금액이 '1억 이하'임. 즉 보통 가정에서도 상속과 관련된 갈등은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마찰 비용이 커질 수 있음.

- 유류분: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로, 유언보다 앞서는 권리임.(민법 제5편 제3장 유류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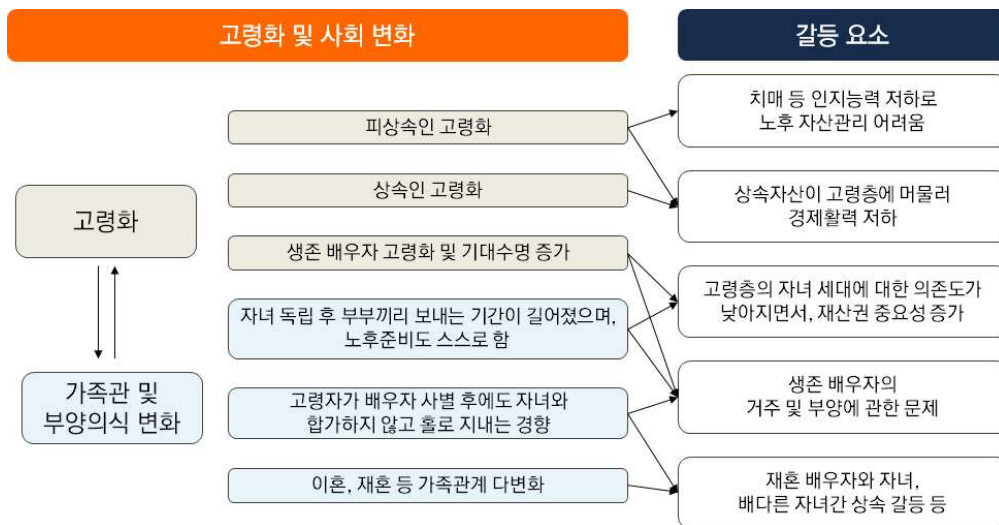
〈도표 2〉 고령사회와 상속의 역할



◎ 고령화 및 사회 변화로 인한 가족 간 상속 갈등, 생존 배우자의 생활 문제 등 다양한 상속 문제에 대응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상속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어질 과제를 명확히 인식해야 함.

- 고령화로 인해 피상속인·상속인·생존 배우자의 연령이 모두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이혼 및 재혼 등이 보편화되는 등 다양한 상속 갈등 요소가 발생함.

〈도표 3〉 고령화로 인한 상속시장의 변화 및 갈등 요소



## II. 우리나라 상속시장 현황

### 1. 상속시장 규모

※ **상속시장(Inheritance Market)**: 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에 일어나는 일종의 경제적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비금융자산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자산시장을 ‘상속시장’이라 칭하기로 함.

● 우리나라의 총 상속자산 규모\*는 14년 전에 비해 3.0배 성장했으며, 평균금액은 2.9배 증가함.

\* 총 상속 자산 규모: 과세·과세미달 상속자산 및 상속가산금액(사전 증여액)을 포함한 금액임.

- 상속자산 규모는 2003년 12.0조 원에서 2017년 35.7조 원으로 증가함.
-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금액은 2003년 5천 2백만 원에서 2017년 1억 5천 5백만 원으로 증가함.
- 총 상속건수는 2003년 22.7만건, 2017년 22.9만건으로 유사한 수준임.

〈도표 4〉 상속 규모 비교

구분		2003년	2017년	증가폭
상속	건수	22.7만	22.9만	1.0배
	금액	12.0조	35.7조	3.0배
	건당 평균금액	5천 2백만원	1억 5천 5백만원	2.9배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03~2017)  
총 상속·증여자산에는 상속가산액(10년내 증여)이 포함됨.

● 우리나라의 상속시장은 과세(국세통계 有)와 과세미달(국세통계 無)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과세 부문의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3%에 불과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46.1%를 점유하고 있음.

- 2017년 총 상속 23만 건 중 상속세가 과세된 건은 약 7천여 건으로, 해당 상속건의 자산규모는 총 16.5조원임.

〈도표 5〉 2017년 총 상속 중 과세여부별 구분

과세구분	평균금액	건수		금액	
		건(만건)	비율(%)	금액(조원)	비율(%)
과세	23억 5천 7백만원	0.7	3.0	16.5	46.1
과세미달	8천 7백만원	22.3	97.0	19.3	53.9
합계	1억 5천 5백만원	23.0	100.0	35.7	100.0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7)

- 과세 부문이 전체 시장의 모습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미달 부문에 대해서는 공식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과세 부문의 상속세 국세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상속시장의 특성을 미루어 파악하고자 함.

## 2. 상속시장 특징

※ 본 장의 상속시장 특징은 국세통계 데이터가 존재하는 과세 대상 상속을 의미함.

- [피상속인 연령] 피상속인 중 ‘80대 이상’ 고령자가 절반 이상(51.4%)이며, 70대가 27.1%임.

– 피상속인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해당년도 실제 사망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와 비교해 보면, 50대 이하의 사망인구(17.5%)보다 피상속인(9.2%) 구성비가 소폭 낮음. 연령이 낮을수록 자산규모는 대체로 적으므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피상속인 연령대별구성비: 80대 이상 51.4% > 70대 27.1% > 60대 12.0% > 50대 이하 9.1%.
- 사망인구 연령대별구성비: 80대 이상 44.8% > 70대 24.5% > 60대 13.2% > 50대 이하 17.5%.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

- [상속금액 분포] 상속금액은 ‘10억-20억’(38.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상속금액: ‘10억-20억’ 38.4% > ‘5억-10억’ 22.0% > ‘20억-30억’ 13.0% 순

– 현행 상속세제(배우자 공제, 통합공제 등)로 인해 일정 한도 이내의 상속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상속건의 금액은 대부분 10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상속 자산구성] 상속 자산 중 부동산이 59.8%를 차지, 금융자산은 16.2%임.

– 부동산은 토지(32.4%)와 건물(27.4%)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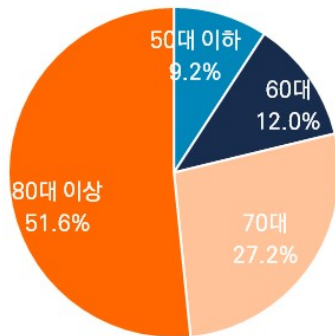
◎ [실효세율] 총 상속의 실효세율\*은 17.2%이며, 가장 건수가 많은 ‘10억-20억’ 구간은 5.5% 수준임.

\* 구간별 실효세율 = 구간별 총 납부세액 / 구간별 총 상속재산가액 × 100  
(총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가산액이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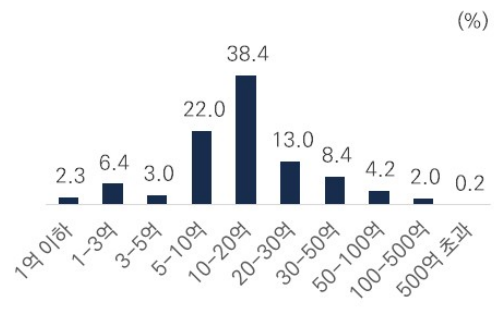
– 실효세율은 자산이 클수록 높아지며, 20억 미만의 경우 실효세율은 5.5% 미만임.  
‘20억-100억’ 구간의 실효세율은 11.0~21.9% 수준임.

〈도표 6〉 과세상속시장 특징 4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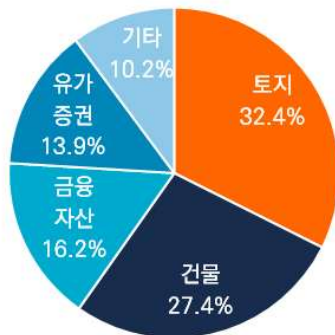
〈피상속인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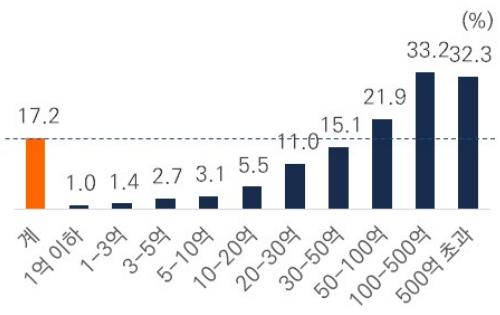
〈상속금액 분포〉



〈상속자산 구성〉



〈실효세율〉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7)

※ 참고: 우리나라의 증여규모 및 특징

우리나라 상속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여시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속의 일환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총 증여규모는 54.7조원, 건수는 32.6만건으로 상속보다 컸다. 증여건 중 55.8%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된 것이며, 수증인 연령은 40대(26.6%)와 50대(22.5%)가 가장 많았다. 증여자산 중 54.5%는 부동산이었다.

### Ⅲ. 상속시장의 과제

#### 1. 배우자 상속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생존 배우자의 거주 문제 및 자녀와의 상속 갈등이 커질 수 있어, 고령 생존 배우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가구주가 집 한 채만을 남기고 사망할 경우 상속 갈등으로 인해 남은 배우자의 거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

–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총 자산(4억 1천만원) 중 부동산(3억 2천만원) 비율은 평균 78.2%에 달함.(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

– 거주주택 상속 시 배우자 지분: 배우자의 몫은 자녀의 몫에 0.5배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녀에게는 균분상속됨. 즉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우자 지분이 적어져, 자녀 1명일 때 60% > 2명일 때 42.9% > 3명일 때 33.3% 순임.

〈도표 7〉 자녀 수에 따른 배우자 상속 비율

상속인 구분	배우자	자녀(1인당)
자녀 1명	60.0%(=3/5)	40.0%(=2/5)
자녀 2명	42.9%(=3/7)	각 28.6%(=2/7)
자녀 3명	33.3%(=3/9)	각 22.2%(=2/9)

※ 자료: 민법 제 1009조(법정상속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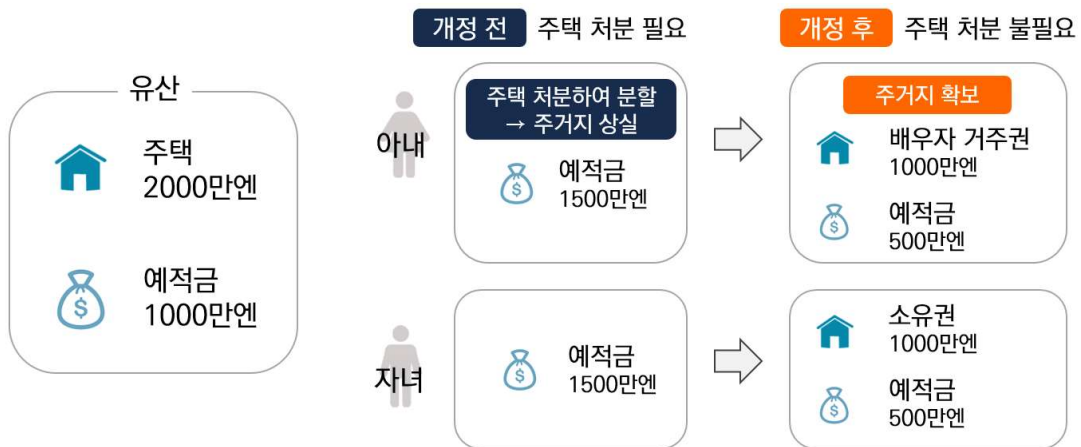
– (사례) 부부가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고 이 중 남편이 거주주택 한 채(3억 5천만원)를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함. 두 자녀가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아내는 주택을 처분하고 자녀의 몫(각각 1억원)을 지급한 뒤 남은 자산(1억 5천만원)으로 다시 살 곳을 찾아야 함. 또한 해당 자금으로 거주지 뿐 아니라 노후 생활비까지 해결해야 한다면 생존 배우자의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지게 됨.

●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8년 민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하고, 자택을 유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배우자 우선 정책을 펼침. (‘2018년 일본 개정 상속법 개관’, 안암법학회)



- 배우자 거주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후, 생존 배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상속재산분할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해 배우자는 ‘배우자거주권’을 취득하고,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은 ‘부담부소유권’을 취득함.
- <도표8>의 사례를 보면 유산이 총 3,000만엔(주택 2,000만엔, 예적금 1,000만엔)일 때, 일본의 개정 전 민법에 따르면 아내의 상속분은 절반인 1,500만엔이므로 자녀에게 상속분을 지급하려면 주택을 처분해야 함. 그러나 배우자 거주권 신설 후 아내는 주택 전부가 아닌 거주권(1,000만엔)을 상속받고, 예적금 500만엔을 받아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음.
- 자택 유산분할 제외: 부부의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부부간에 거주용으로 제공된 건물 또는 부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임. 즉 자택을 유산분할에서 제외하여 배우자가 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됨.

〈도표 8〉 배우자 거주권 도입에 따른 변화



※ 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 일본 국내동향(2018.7)의 사례를 바탕으로 함  
일본의 경우 1자녀일 때 상속 비율은 아내:자녀=1:1임

◎ 국내에서도 지난 2014년 배우자의 상속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법 개정은 불투명한 상황임.

- 2014년 1월,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선취분)하고 나머지 재산을 기존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결국 법제화 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됨.

## 2. 주택 상속과 주택연금

고령화 및 부양 의식 변화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주택을 미래 상속재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주택연금 가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배우자 상속 시 자녀 동의가 필요해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함.

-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누적 6만 5천여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기보다 자신의 세대에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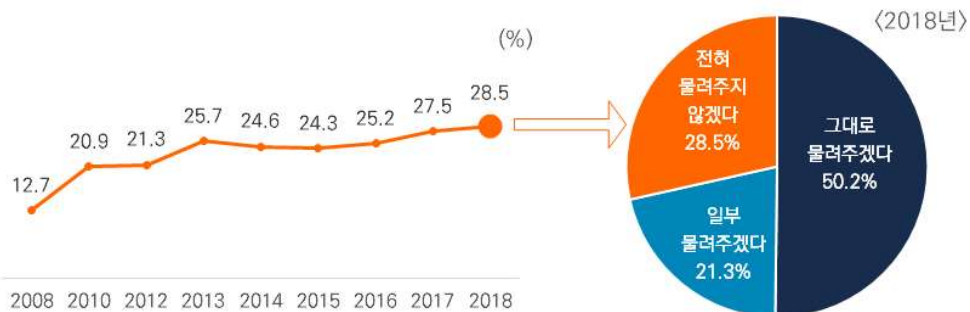
–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이 보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고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6월 가입자 수는 6,044명, 2019년 6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65,581명에 달함.(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에는 ①노후 생활을 위한 주택자산 활용 필요성 증대, ②주택 상속에 대한 의지 약화라는 두 가지 배경이 있음.

① 주택자산 활용 필요성: 이른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고령 가구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노후자금을 적절하게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② 주택 비상속 의향 증가: 주택연금 미가입 60~85세 고령층 설문 결과, 주택을 ‘전혀 물려주지 않겠다’는 응답은 2008년 12.7%에서 2018년 28.5%로 두 배 이상 증가함.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2018)

〈도표 10〉 주택 비상속 의향 추이



※ 자료: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2018)  
 주) 주택연금에 미가입한 만 60~84세 남녀 2,700명 대상

● 그러나 여전히 일부에는 주택을 미래 상속재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 있어 주택연금 가입에 걸림돌이 되기도 함.

- 부모가 미래 주택 상속을 대가로 자녀에게 봉양 또는 효도를 바라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 사후 상속을 기대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반대하는 사례도 있음.

●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해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신탁 방식 주택연금'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3~2016년 3년간 자녀 반대로 인해 주택소유자 사망 후 주택연금 배우자 이전을 하지 못한 사례가 20여 건에 달함.

· <사례 1> 서울에 살던 80대 부부(주택 공동명의)가 월 159만원의 주택연금을 받다가 아내가 사망함. 남편 A씨는 연금을 계속해서 받으려 했으나 자녀들(7명)의 반대로 연금 지급이 종료됨. 이후 주택금융공사가 경매를 진행해 주택은 3억 380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대출상환 후 자녀 7명이 900만원씩 나눠 갖고 남편은 9300만원을 받고 집에서 나오게 됨.

· <사례 2> 25년 전 재혼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3명의 자녀를 길러 출가시킴. 이 부부가 노후에 주택연금(주택 A씨 명의)에 가입해 월 163만원의 주택연금을 받던 도중 남편이 사망함. B씨는 연금을 계속해서 받고자 했지만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감.(조선일보, 2016.10.6.)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 필요 없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주택연금이 승계되는 '신탁형 주택연금' 도입이 예고된 바 있음.(금융위원회, 2019.3)

- 단, 주택금융공사가 신탁형 주택연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신탁사업자 지위를 얻어야 하여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법 개정은 요원한 상황임.

※ <주택연금 소유자 사망시 절차>

-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소유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음. 그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됨.(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 19조 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 3장 제2절 참조)

- 이 때 부부에게 자녀가 있고 주택 외의 다른 자산이 없다면,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경우 모두 자녀의 동의가 필요함.

- ①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개시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되므로 주택연금 유지를 위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함.
- ② 주택 소유자가 유언을 통해 주택을 전부 배우자에게 상속한 경우 :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자녀 동意的 필요함.

### 3. 노노(老老)상속

‘노노상속’이란 고령화로 상속인인 부모와 피상속인인 자녀가 모두 고령자가 되면서, 자산이 고령층 내에서만 순환하는 현상임. 가까운 일본 사례를 보면 이로 인한 내수 소비 저하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사전적 예방 조치가 필요함.

● 우리나라 고령자의 평균 사망연령이 높아지면서, 80대 이상 고령자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자산을 상속하는 ‘노노상속’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우리나라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 대상 상속건의 피상속인 중 51.6%가 ‘8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여년 전인 1998년 일본의 피상속인 연령 구성비(80대 이상 46.5%)와 유사한 수준임.
-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의 2013년 피상속인 구성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 중 68.3%가 ‘80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0대 이상’이 23.7%에 달함. (일본 재무성 주세국조사, 2015)

〈도표 9〉 피상속인 연령 분포 추이



※ 자료: 일본 재무성 주세국조사(2015) 및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7)  
 피상속인 중 연령미상은 제외한 값임.

● 노노상속을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로 인해 ①사회 전반 소비·투자 감소, ②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① 사회 전반 소비·투자 감소

- ‘장롱예금’ 증가 :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시기의 자산운용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일본의 장기 저금리 기조와 고령자의 안정 추구 성향 등이 겹쳐, 일본에서는 현금을 집안에 쌓아두는 이른바 장롱예금 현상이 나타남.

- 다이이치(第一) 생명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월말 일본의 장롱예금 규모는 약 50조 엔으로, 총 발행 현금(100조엔)의 절반에 육박함.

## ②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 문제

- 최근 일본 언론에는 ‘치매 머니’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치매에 걸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의미함. 자산 소유주가 치매에 걸리면 자산 인출이나 처분에 대한 본인 동의가 어려워져 자산이 실질적으로 동결되는 문제가 생김.
- 2017년 기준 일본의 치매 머니는 143조 엔에 달하며, 2030년에는 215조 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맞먹는 규모임.  
(다이이치(第一) 생명경제연구소, 2017)

## ◎ 일본에서는 노노상속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 및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조손간 교육자금 증여’에 한시적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원활한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를 참고해 불만 함.

- 일본 세제조사회(2015)에 따르면 일본 상속·증여세제의 기본 방향은 ‘생전증여를 용이하게 하여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이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는 것’으로, 이는 소자녀·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자산이전이 늘어나는 데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 일본에서는 2013년 손자녀 대상 교육자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증여세 비과세를 실시했으며, 2015년에는 주택취득자금, 육아·결혼·출산 비용까지 혜택을 확대함.

〈도표 10〉 일본의 세대간 자산 이전 촉진 정책

구분	기간	대상 및 금액	내용
주택취득자금 증여	2015.1~ 2021.12	자녀·손자녀 주택 구입 시 1000만엔까지 비과세	거주용 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을 위한 비용
교육자금 일괄 증여 비과세	2013.4~ 2019.3	자녀·손자녀 대상 1500만엔까지 비과세	30세 미만 손자녀의 학교 입학금, 수업료, 사교육비용 등
육아·결혼·출산 증여	2015.4~ 2019.3	자녀·손자녀 대상 1000만엔까지 비과세	결혼식 비용, 임대 보증금, 이사 비용, 임신,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비용 등

※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등,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2018)



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상속인의 생활 보호라는 유류분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됨.

● 유류분에 대한 또 다른 비판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전략적 상속 동기’\*를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음.

\* ‘전략적 상속동기(Strategic Exchange Bequest Motive)’란 1985년 美 번하임 스탠 포드대 교수, 써머스 전 재무장관이 제시한 이론으로, 부모가 자신의 상속자산을 대가로 자녀의 돌봄(Service)을 제공받는다라는 내용임.

- 일부 고령층은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고, 자신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자녀들의 유류분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해 온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함.
-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가 부모의 ‘전략적 상속’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됨.

● 반면 상속인 간 평등 추구 및 갈등 조율 등 유류분 고유의 기능이 있으므로, 정부는 탄력적 대응을 통해 현대 고령사회에 적합한 상속 제도를 마련해나가야 함.

- 유류분제도는 균분상속과 더불어 상속인 간의 평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함. 유류분 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이 외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뿐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재산을 집중시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됨. (박세민, ‘유류분제도의 현대적 의의’, 일감법학 제 33호, 2016)
- 또한 이혼과 재혼이 보편화되면서 가족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상속에 관한 갈등 역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유류분 제도가 이러한 ‘법정상속인’과 ‘유언’ 간 갈등을 조율하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A씨의 부친이 친모(전처)와 이혼 후 재혼하였고, 사망하면서 유언을 통해 후처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한 경우, A씨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1/2을 후처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음.

## IV. 시사점

◎ 고령화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연령이 증가하고 생존배우자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등 상속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적 측면: 유류분 제도 및 주택 상속 의사결정은 피상속인의 소비 및 노후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속 갈등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음. 또한 배우자 상속은 고령층 생존 배우자의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 경제·사회적 측면: 노노상속은 경제 활력 둔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배우자 상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비용 증가를 불러올 수 있음.

〈도표 12〉 고령사회 도래로 인한 상속시장의 4가지 과제



◎ 개인·자본시장·정부는 각각 고령화로 인한 상속시장의 변화와 과제를 인식하고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① [개인]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갈등은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마음의 고풍을 남기므로, 상속재산이 있는 고령층의 경우 생전에 유연을 남기는 등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생전 유언장 작성·상속 설계가 사업가나 고액자산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와 같은 인지능력 하락이나 가족 간 갈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함.
- 실제로 일본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종활’(終活, 슈카츠)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는데, 이는 일본 노인들이 각지에 흩어져 사는 자녀가 자신의 사후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생전에 재산을 미리 정리하고 유언을 남기는 등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활동을 의미함.
-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법은 5가지(자필 증서·녹음·공정 증서·비밀 증서·구수 증서)로 각 방법에 따라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화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②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고령자의 상속에 특화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상실이 걱정된다면 유언신탁과 같은 ‘상속형 신탁’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상속형 신탁이란 상속재산을 금융기관이 수탁해 운용하면서 계약상 정해진 방법대로 유증되도록 하는 신탁으로 유언신탁·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등이 있음.

**③ [정부] 정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부양의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상속세제 및 제도를 재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일본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유언 절차를 간편화하고, 고령층의 손자녀 교육자금 증여에 일시적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거나 배우자 상속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참고해 볼 만 함.

##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저성장·저금리·고령화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은퇴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은퇴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 01 은퇴자산은 글로벌로 분산투자해야 합니다.

저성장·고령화로 인해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은퇴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02 은퇴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합니다 .

집중투지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은퇴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

### 03 은퇴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은퇴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 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

### 04 은퇴자산은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은퇴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

### 05 은퇴자산은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은 금리는 은퇴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시기부터 그에 맞게 은퇴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오늘날 공적 사회보장 제도만으로는 노후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저금리·저성장·고령화라는 '2低1高 시대'를 맞아 은퇴자산을 축적하고 운용하는 데 개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은퇴콘텐츠 개발 및 연구, 전문적인 은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를 통해 은퇴설계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미래에셋은퇴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 [32] 5060 은퇴리스크 매트릭스, 2017.3
- [33] 노후자금 인출의 숨겨진 위험 시퀀스리스크, 2017.5
- [34] 덩케르크 철수작전에서 배우는 노후자금 인출전략, 2017.10
- [35] 투자자산을 연금화(化)하는 5가지 방법, 2018.2
- [36] 연금자산의 TDF 투자현황과 개선방안, 2018.4
- [37]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가계 자산 특징 및 시사점, 2018.10
- [38] Next 20년, 내 자산을 어디에 둘까-일본의 '과거 20년'이 주는 교훈, 2018.11
- [39] 은퇴자를 위한 피사의 4탑, 2018.12
- [40] 초장수시대의 노후자산 운용, 2019.7
- [41]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2019.8
- [42]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 2019.10

은퇴리포트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retirement.miraeasset.com](http://retirement.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은퇴리포트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본 내용을 인용하거나 전재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